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8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김병주·안규백·김민기

이형석 · 이병훈 · 양기대

김진표・설 훈・박성준

홍영표 · 송영길 · 민홍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방과학연구소(ADD)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 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,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 위험에 노출되 어 있음.

이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또한, 그 조사에 있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조사기본법」

에 적용받지 않기에 조사의 방법·절차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(안 제11조 및 제11조의2).

법률 제 호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조치"를 "조사 및 조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조치"를 "조사 및 조치"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「군사기밀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조사)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(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)에게 출석·진술요구,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, 현장조사·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석·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

- 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.
- 1. 일시와 장소
- 2. 출석요구의 취지
- 3.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
- 4. 제출자료
- 5.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- 6.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1. 일시와 장소
- 2. 조사의 목적과 범위
- 3.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
- 4.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)
- 5.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1. 제출기간
- 2. 제출요청사유
- 3. 제출서류
- 4.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

- 5.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- 6.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- 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
- 1. 조사목적
- 2. 조사기간과 장소
- 3. 조사원(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 무원·직원)의 성명과 직위
- 4. 조사범위와 내용
- 5. 제출자료
- 6.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- 7.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 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 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(조사의 목적·종류·대상·방법 및 기간, 조

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 포함)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.

-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,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,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(이하 "출석요구서등"이라 한다)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- 1.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 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2.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
-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① 조사대상자는 제8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 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 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 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 다.

-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① 기타 조사에 필요한 절차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제11조(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제11조(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) ① 대상기관의 침해 신고 등) ① -----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, 방위산업기 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----- 조사 및 조치---수 있다.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 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 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 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<u>조치</u>를 하여야 한다. <u><단</u> --- 조사 및 조치----. 다 서 신설> 만, 「국군조직법」 제2조제3 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 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 위산업기술이 「군사기밀 보호 법」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

<신 설>

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조사) ① 방위사업청
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
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
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
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
(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·단
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)에
게 출석·진술요구, 보고요구 및
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,
현장조사·문서열람을 할 수 있
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출석·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석한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.
- 1. 일시와 장소
- 2. 출석요구의 취지
- 3.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

내용

- 4. 제출자료
- 5.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- 6.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한다.
- 1. 일시와 장소
- 2. 조사의 목적과 범위
- 3.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
- 4.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

 법령 및 조항 포함)
- 5.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1. 제출기간
- 2. 제출요청사유

- 3. 제출서류
- 4.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
- 5.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- 6.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 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 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 송하여야 한다.
- 1. 조사목적
- 2. 조사기간과 장소
- 3. 조사원(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 관의 공무원·직원)의 성명과 직위
- 4. 조사범위와 내용
- 5. 제출자료
- 6.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(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)
- 7. 그 밖에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

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 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 사계획(조사의 목적·종류·대상· 방법 및 기간, 조사거부 시 제 재의 내용 및 근거 포함)을 수 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 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 획을 갈음할 수 있다.

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 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 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 구서,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

서,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 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 입조사서(이하 "출석요구서등" 이라 한다)를 조사개시 7일 전 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 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.

- 1.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

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

 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

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

 단되는 경우
- 2.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 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
-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행정조 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 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 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① 조사대상자는 제8항에 따른

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.

① 기타 조사에 필요한 절차·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